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본예산 수정 1 차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84,200,000	5,526,000
일반회계	170,300,000	5,109,000
특별회계	13,900,000	417,000
기타특별회계	13,900,000	417,000
상수도사업특별회계	6,000,000	180,000
수질개선특별회계	3,570,000	107,100
의료급여특별회계	550,000	16,50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	1,100,000	33,000
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	1,340,000	40,200
치수사업특별회계	1,340,000	40,2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

제 4 조 계속비이월은 별첨 "계속비사업이월조서"와 같다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906,987천원으로 한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